




목 차

	1.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
	2. 사업개요
	3. 인재양성센터 구성방법 및 운영방안
	4. 사업신청 및 선정평가
	5. 성과관리방안
	6. 사업비 가이드라인
	7. 향후 추진일정

2/17

1.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

□ 추진 배경

- 정부의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계획과 연계, 지방대학이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·공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 창조에 기여
- 산업체·대학·광역협업체·지역연구소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위한 매개로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

■ 추진 경과

- 교과부, 제2차 균형위 '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방안' 보고('08.9.10)
- 광역권 거점대학 육성 추진 정책연구 실시('08.10~'09.1)
- 광역권 거점대학 육성 추진 T/F팀 구성·운영('08.10~12)
 - 1차회의(사업단장/10.16), 2차회의(선도산업전문가/10.23), 3차회의(중소기업관계자/11.17)
 - 4차회의(대기업관계자/12.3), 5차회의(지자체관계자/12.9)
- 지경부 선도산업과 교과부 인재양성사업 연계 추진('08.10~'09.1)
- 광역권 거점대학 육성사업 선정지표 연구('09.1)
- 광역권 거점대학 육성사업 최종 의견수렴('09.1.16~29, 공문)

3/17

2. 사업개요 (1/2)

□ 사업 기간 : '09년 ~ '13년 (3년+2년)

- '11년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변경된 경우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함

■ 사 업 비 : '09년 1,000억원 (5년간 총 5,000억원)

■ 사 업 권 역 : 5+2 광역경제권 (수도권 제외)

■ 지 원 분 야 :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('08.12.22 확정 발표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충청권 (의약바이오, New IT) | ② 동남권 (수송기계, 융합부품·소재) |
| ③ 대경권 (그린에너지, IT융복합) | ④ 강원권 (의료융합, 의료관광) |
| ⑤ 제주권 (물 산업, 관광레저) | ⑥ 호남권 ('09.2.6 현재 합의안 미제출) |

■ 지 원 대 상 : 선도산업별로 1~2개 대학 (총 20개 내외)

-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국·공·사립 대학
 - 교육대학은 설립목적(초등학교의 교원 양성)상 지원대상에 제외
 -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 포함

4/17

2. 사업개요 (2/2)

- **지 원 예 산 : 대학내 센터당 50억원 내외** (특별광역시권 예외)
 - 대학자율화 및 지자체·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최초 선정시 매칭펀드 면제
 - 사업계획에 따라 인재양성 분야로 자율 집행하되, 시설·설비 및 기자재 등 H/W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S/W 투자
- **지원교육 과정 : 학부과정, 대학원 과정, 미취업 졸업자 지원과정**
 - 선도산업과 직접 관련한 분야의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을 지원하되, 대학원 과정의 경우 학부과정과 팀을 이뤄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
 - ※ 개별 수혜자는 여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- **선 정 방 식 : 광역경제권별 공개경쟁 선발** (1단계 공동선발)
 - 지역위원과 중앙위원이 공동으로 참여, 지역수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선발체제 구축
- **선 정 기 준**
 - 선도산업분야 인프라 구축현황, 인재양성 실적,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5/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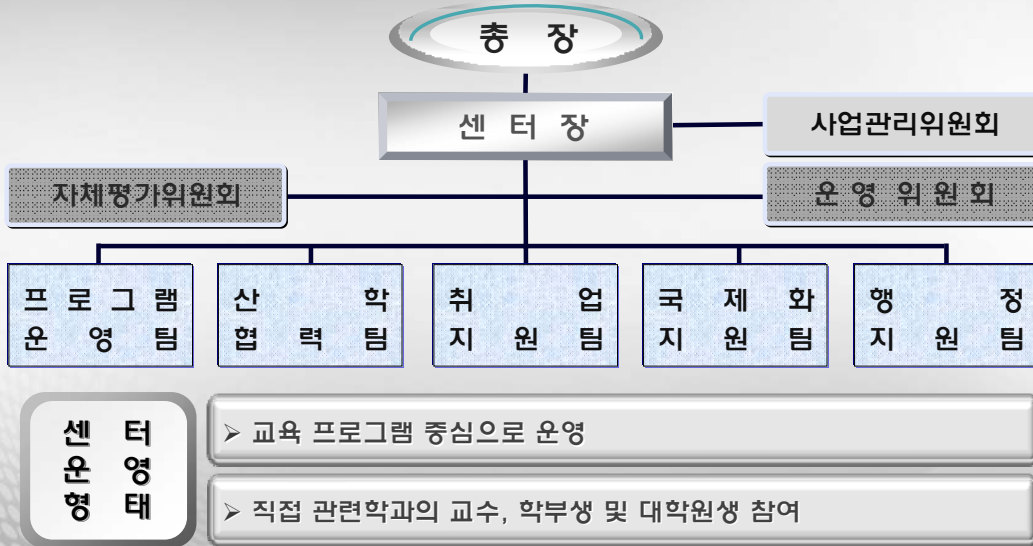
3. 인재양성센터 구성방법 및 운영방안 (1/3)

- **센터 구성원칙**
 - 학사조직 단위를 기본단위로 구성하되, 복수의 학사조직이 연합하여 참여가능
 - 대학원 과정의 경우 학부과정과 팀을 이뤄 참여
 -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소속된 교원은 모두 센터에 참여한 것으로 봄
 -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소속된 학생은 '참여확인서'를 제출한자에 한하여 참여한 것으로 봄
 - 대학 이외에 산업체, 연구소,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
 - 대학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총장 직속기구로 설치
- **센터조직 구성방안**
 - 센터장의 자격
 - 해당대학의 교원 중 대학 장이 자율적으로 임명 (단, 교무위원으로 임명을 원칙으로 함)
 - 사업기간(5년)동안 지속적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한 자
 - R&D 및 HRD 등 국책사업, 리더십, 산업체 경력 등을 갖춘 자
 - 센터장의 권한 : 인재양성센터 총괄 업무수행
 - 센터 부서장 등 구성원
 - 센터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(사업기간(5년)동안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)
 - 산학협력 부서장은 전직CEO 또는 기업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(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)

6/17

3. 인재양성센터 구성방법 및 운영방안 (2/3)

□ 센터조직 구성방안 조직 구성도 (예시)



7/17

3. 인재양성센터 구성방법 및 운영방안 (3/3)

□ 센터 운영형태 체계도(예시) : 필수프로그램 외 센터 자율운영



8/17

4. 사업신청 및 선정평가 (1/4)

□ 신청 자격

- 선도산업분야 인재양성을 희망하는 대학 소속 인재양성센터
 - 예비 센터장 및 소속 대학 총장 공동명의 신청
- 별도의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는 분교가 소재한 해당 광역경제권으로 신청

■ 신청 제한

- 1개 대학은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1개 분야의 센터만 구성하여 신청 가능
 - 특별 광역경제권(강원·제주)의 경우 1개 대학이 선도산업 분야별로 각각 센터를 구성하여 신청 가능 (1개 대학 최대 2개 센터 신청)
 - ※ 다만, 각각의 센터의 참여하는 대학 내 조직은 중복할 수 없음
-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선정 대학의 신청 가능 여부 추후 결정 (사업공고시 확인)
- 호남권의 경우 광역권 선도산업 확정 후 참여 가능

9/17

4. 사업신청 및 선정평가 (2/4)

□ 선정 방식 : 1단계 공동선발 (지역위원+중앙위원)

■ 선정 절차

- 선도산업별 '평가위원회'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'사업추진위원회'에서 광역경제권별 지원 대학과 각 대학별 사업비 조정심의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종 결정

■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

- 선정평가위원회는 광역권 선도산업별 패널 구성하고 각 패널은 독립적으로 심사평가 실시
- 각 패널은 패널장 1인을 포함, 9명으로 구성하되 지역위원(6명)과 중앙위원(3명)으로 구성
- 사업위탁기관 주관 하에 전체 패널 동일장소 합숙평가 실시
- 평가는 사업계획서의 서면평가와 예비 센터장의 발표평가 병행
- 각 패널은 신청대학에 대한 평가점수 부여 및 신청사업비 적절성(적정-삭감-중액) 평가

■ 사업추진위원회 최종 조정심의

- 학계, 산업계, 연구계, 정부기관 등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
- 선정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지원대학과 대학별 지원 사업비 결정
 - ※ 사업의 질 담보를 위해 과락 점수(만점의 60% 미만) 설정

10/17

4. 사업신청 및 선정평가 (3/4)

□ 선정평가 심사항목(1/2)

평가영역	평가항목	연번	세부평가지표	비고
사업추진역량	1. 교육여건	1	센터 참여 학사조직의 전임 교원 확보율	정량
		2	센터 참여 학사조직의 재학생 충원율	정량
		3	선도산업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	정성
	2. 선도산업 분야 협력실적	4	센터 참여 전임교원의 선도산업분야 연구개발 과제 수행실적	정성
		5	센터 참여 학사조직의 취업률	정량
		6	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계획과의 일치도	정성
	3. 광역권 선도사업과의 정합성	7	센터장의 전문성 및 역량	정성
		8	센터 조직구성 및 참여인력의 적절성	정성
	4. 인재양성센터의 구성 및 지원계획	9	협력기관 참여계획의 적절성	정성
		10	대학의 지원 의지 및 계획	정성

11/17

4. 사업신청 및 선정평가 (4/4)

□ 선정평가 심사항목(2/2)

평가영역	평가항목	연번	세부평가지표	비고
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	1. 사업목표의 명확성	11	센터비전과 목표수립의 적절성	정성
		12	선도산업분야 인력수요 조사·분석의 적절성	정성
		13	센터 인재양성 계획의 적절성	정성
	2. 인재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	14	교육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창의성	정성
		15	교육 및 연구기반 집적화 계획의 적절성	정성
		16	집적화시설 운영계획의 효과성	정성
	3. 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 프로그램의 타당성	17	미취업 졸업생 대상 프로그램의 타당성	정성
		18	비목적 사업비 배분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	정성

12/17

5. 성과관리방안 [1/2]

□ 성과협약 체결

- 선정된 대학의 장 및 센터장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

■ [상시] 전문컨설팅단 운영

-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별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[선정평가 위원 2인 이상 지속 참여]
- 컨설팅단의 권고사항은 센터의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반영 및 연차, 중간, 종합평가지 반영 조치

■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

- 필수성과지표
 - 프로그램별 참여 인력 규모(학생참여율)
 - 선도산업 분야 취업률, 광역경제권내 취업률
 - 선도산업 분야 산업체와의 협력 실적
 - 참여 산업체, 참여 학생의 만족도
- 자율성과지표
 - 프로그램별 운영실적(기업기반 Capstone Design, 맞춤형 교과과정 개선 등)
 - 기타

13/17

5. 성과관리방안 [2/2]

□ 성과평가 실시

- 연차평가
 - 각 사업연도(1차, 2차, 4차)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계획서 대비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
 - 하위센터의 사업비를 10%내외에서 삭감하여 상위 센터에 인센티브 지원
 -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협약사항 미이행 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 중단
- 중간평가
 - 사업 3년차에 중간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
 - ※ '11년 이후 선도산업 변경시 해당 광역권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
 - 하위센터의 사업비를 20%내외에서 삭감하여 상위 센터에 인센티브 지원
 -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협약사항 미이행 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 중단
 - ※ 성과가 부진한 센터에 대하여 '강제탈락제' 도입(예시 : 전체 센터 중 하위 20% 강제 탈락)
- 종합평가
 - 사업기간(5년)말 종합평가 및 2단계 사업 실시 여부 결정

14/17

6. 사업비 가이드라인 [1/2]

□ 사업비 항목 구분(안)

비 목	내 용
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과정 개선, 교재개발, Capstone Design, 실습활동, 산업체 관계자 특강, 졸업생 재교육 프로그램 등
산학협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실습(국내), 인턴십(국내), 협력기업 기술지도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취업 졸업생 산업체 인턴 수당 지급 가능(휴학생 제외) - 기업과의 공동연구비는 총 국고지원금의 20% 이내 가능, 다만 학부생 참여 의무
국제협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기연수, 단기연수, 인턴십(해외), 학회 참여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수만 참여하는 해외연수 및 출장 지원 불가 - 단순 해외 견학, 어학 연수 지원 지양, 인솔 교수 참여 최소화 - 대학원과정 학생의 해외인턴십 및 1개월 이상 해외연수 지원 제외
교육환경개선비 (건물·건축설비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의실, 실험실습실의 내부시설, 냉난방시설, 인테리어 등의 기타설비 환경개선 등 (총 국고지원금의 10%이내)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실, 실험실습실 등의 집적화 예산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1차 사업연도에 한하여 국고지원금의 30%이내 집행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건물 및 건축설비 유지·보수는 가능하되 건물 및 토지의 매입, 신축, 증축, 개축은 불가

15/17

6. 사업비 가이드라인 [2/2]

□ 사업비 항목 구분(안)

비 목	내 용
기자재 (구입·임차·리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C, 소프트웨어, 부품, 기자재 구입 및 부대경비 등 3천만원 이상 고가 기자재의 경우 '활용계획서' 첨부 의무
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참여 학생에 대한 장학금 (총 국고지원금의 20% 이내)
기타 사업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건비: 비정규직 교원·직원·연구원의 급여, 시간외 수당 등 (총 국고지원금의 5%이내) 운영비: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, 세미나, 워크숍(회의비, 여비), 홍보비, 전시회,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, 우편료 등의 소모성 경비 및 센터 운영 경비
간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(산학협력단 포함)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(총 국고지원금의 3%이내) 미취업 졸업생 산업체 인턴 대상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경비 포함 센터장이 센터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당 연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

16/17

7. 향후 추진일정

-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 사업계획 확정 : '09.2월
-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 사업공고 : '09.2월
- 신청·접수 : '09.3월 (공고후 사업준비기간 만 1개월 부여)
- 지원대상 선정심사 : '09.3 ~ 4월
- 최종 지원대학 확정 발표 : '09. 4 ~ 5월

17/17



감사합니다